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호
- 나. 발의자 : 김희걸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”를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하고 “비치”를 “보관”으로 함.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9조 제1항 중	국토해양부장관이	국토교통부장관이
제10조 제2항 중	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	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
제11조 제2항 중	적합하도록	맞도록
	비치하여야	보관하여야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우선, 안 제9조 제1항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, 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,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음으로, 안 제11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함.
- 다만, 법제처(2011)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하는 “비치하다”는 “갖춰두다” 또는 “갖춰놓다”, “갖추어 두다” “준비하다”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,
- 또한, “적합하다”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립국어원 순화어 권장 사항에 따르면 “알맞은”으로 순화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“적합”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.
- 덧붙여, 개정안에서 제시한 제10조 제2항 본문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, 여기서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」는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」을 단순히 오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,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, 오기된 부분은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교정·보완 될 필요가 있음.

<개정안 본문 관련 내용> 제10조제2항중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”를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